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변경)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2023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장

□ 사업개요

- o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 o 지원규모 : 약 13,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ㅇ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공백 발생한 경우
-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o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ㅇ 서비스 절차



□ 신청안내

o 신청기간: '23. 6. 27.(화) ~ '23. 11. 1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o 신청방법: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절차 :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 제출서류 안내 : 붙임2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개별 문자 통보예정

□ 기타 유의사항

- ㅇ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한부모 가사서비스)
 - ※ 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기 수혜받은 경우 <u>동일한 영어(대상자)에 대하여 서울형</u> 가사서비스 신청 불기(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택1)
 - ※ 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기 수혜받은 경우 **동일한 연도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차년도 맞벌이·다자녀 분야 신청 가능)
 - 단, '22년도까지 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금년도 서울형 다자녀·맞벌이 분야는 신청 가능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권역별 문의처** ※ 다산콜재단(120) 또는 소관 권역별 운영업체에 문의

구분	운영업체	권역 자치구	전화번호
1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1566-7390
2	참사랑어머니회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02-3473-0508
3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1660-4766
4	든든한 파출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02-845-8797
5	㈜홈스토리 생활 대리주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02-6204-4811

붙임1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기준

□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득기준

ㅇ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중위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50% 이하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12,162,000	13,481,000					

o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단위: 원)

		노인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보험료 포함여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호합				
0.61	F 10F 000	미포함	183,861	142,142	186,476				
2인	5,185,000	포함	207,414	160,350	210,364				
3인	6 652 000	미포함	237,913	206,359	242,216				
ડિય	6,653,000	포함	268,390	232,794	273,244				
40]	0 100 000	미포함	291,898	273,699	299,947				
4인	8,102,000	포함	329,290	308,760	338,370				
[A]	9,497,000	미포함	346,067	335,569	359,887				
5인		포함	390,398	378,555	405,989				
col	10.040.000	미포함	403,785	402,840	434,962				
6인	10,842,000	포함	455,510	454,444	490,681				
70	10 100 000	미포함	434,962	436,179	476,875				
7인	12,162,000	포함	490,681	492,054	537,963				
0.6]	10 401 000	미포함	521,613	527,523	563,270				
8인	13,481,000	포함	588,432	595,099	635,425				
0.0]	14 000 000	미포함	563,270	570,140	625,329				
9인	14,800,000	포함	635,425	643,175	705,434				
100]	16 120 000	미포함	625,329	628,210	729,187				
10인	16,120,000	포함	705,434	708,684	822,596				

※ 기구 내 소득활동이 있는 기구 구성원(자녀 기준 2촌이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년분) 반드시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불기한 경우 '건강보험료 지격득실확인서' 제출 요망

불임2 **지원유형별 제출서류**

1. 임산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임신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3개월 내 발급 예외**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2004년생 6월 20일 출생 자녀부터)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기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지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지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1.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기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지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지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2.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이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4. 자격확인용 제출서류별 발급처는?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 필	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요시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문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기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통	공통사항		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료기관 등			
			상시)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독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임산부	임신중	_	사실 확인서 (3개월 발급 예외) 당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기능	의료기관			
ВСТ	출산 후 1년이내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_			
	자녀 이상)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_			
(부부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제출 없음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상시 근로자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먖	벌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해당 재직기관			
(모두 직 아닌 경우 * 건	(모두 직장가입자 이닌 경우 또는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경우만 제출		업자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기타		2)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서, 홈택스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등	재직기관(고용임금 확인서) 등			

서식1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필수 제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1.1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	t)주소						(전화 :)	
근로유형			□ 상시근로자□ 임시 · 일용직□ 자영업(노점,행상,분□ 기타	동어업 등)						
근로시간			일 시간 오전 : 일 시간 오후 : 주 당 근로일수 : 주 근로시간 : 총	~ 일	:		(시간) 시간)		
	일	당 제	1일 임금 : 월 평균 근로일수 :			원 일				
소 득	월	급 제	월 평균 총 급여 :		원					
유형	자	영 업	월 평균 총 소득 :		원					
	7	기 타	월 평균 총 소득 :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		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근로활동 및 소득 내용을 신고합니다.										
			2023년		일					
			신고자 :		(인)					
자치구청장 귀하										

* 고용자 작성

고용·임금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월일				
피 고	주		소											
용 자		용 성		주		일		시간						
,		피고용자가 하는일 적으로기재												
고	8	기	간		Ļ	<u> </u>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1 일	임 금	:			원				
				일당제	1일 근	구무시?	간 :			시간				
					월평균 고용일수 :					일				
			· 형 태 월급제	구분				()월분	()월분	()월분	
임	금 지	급 형		,	7] -	본 급	<u>'</u>							
		(최근	각종 수당											
		3개월간 임금 기재)		3개월간 임금 기재)	기 타 금 액 (여비, 자동차유지비 등)									
					합계 금액									
국민건	닌강보	험 가입	J여부] 가	•	입			가	입		
상	기와	같이	피고-	용인이 본	사업장	에 그	1용되	어 있음	을	확인합니	 다.			
2023년 월 일														
사 업 장 명:														
			장 주											
			\등록변 허가번:		전화번호 :									
			기기인. 립 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